

## IV. 일본의 신체류관리제도 안내

◎ 작성 : 이우준 영사

일본 법무성(입국관리국)은, 2012. 12. 20. 내각회의에서 2012. 7. 9.부터 외국인등록법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맡아 왔던 외국인등록업무를 법무성 산하기관인 입국관리국으로 이관하고, 지금까지 등록외국인에게 발급해 오던 외국인등록증을 새로운 신분증인 "“체류카드”"로 교체 발급하는 등의 신체류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개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현행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카드”"로 교체 발급

○ 지금까지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왔으나, 2012.7.9.부터는 이 업무가 법무성 산하 지방입국관리국으로 이관되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외국인등록증 대신 IC칩이 내장된 "“체류카드”"로 대체 발급하게 되며, 현재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관할 입국관리국에 신고하여 새로운 “체류카드”로 교체 발급 받아야 함.

○ "체류카드"는 2012. 7. 9.부터 법무대신 명의로 발급하지만, 현재 210만여명에 달하는 등록외국인의 신분증 갱신발급에 따른 창구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법무성은 2012. 1. 13.부터 전국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현재 소지한 외국인등록증은 새로운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함.

○ 새로 도입되는 신분증은 일반등록외국인에게는 "“체류카

드”로, 특별영주자에게는 "특별영주자증명서"로 이원화하여 발급되며, 기재사항은 현행 외국인등록증 기재사항 중 세대주, 출생지, 여권번호, 직업, 근무지 등이 생략되는 반면,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기재사항 등이 입력된 IC칩을 내장함.



## 2. “체류카드” 발급 대상자

○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상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적법하게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중장기 체류외국인은 모두 해당되나, 다음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됨.

-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자
- 체류자격이 외교관, 공용, 단기체재인 자
- 특별영주권자(별도 "특별영주자증명서" 발급)
-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
- 위 각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이 정하는 자

## 3. 체류기간 상한의 연장 및 세분화

○ 현행 체류기간의 최장기간은 3년이나 새로운 제도에 따라 5년으로 상한이 2년 연장됨.

○ “유학” 체류자격의 경우 체류기간을 세분화하여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의 체류기간이 추가되고, “일본인의 배우자”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5년, 6개월의 체류기간이 추가됨.

#### 4. 1년 이내 재입국자의 재입국허가 면제

○ 유효한 여권과 “체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은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재입국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 (지금까지는 출국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에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음).

○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할 경우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됨. (특별영주자의 경우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2년간 연장)

#### 5. 외국인등록법 폐지에 따른 각종 신고방법의 변경

○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市.區.町.村)에 신고하여야 함.

○ 그 외 국적,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과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가 사별하거나 이혼할 경우 14일 이내 관할 입국관리국에 신고하여야 함.

#### 6. 벌칙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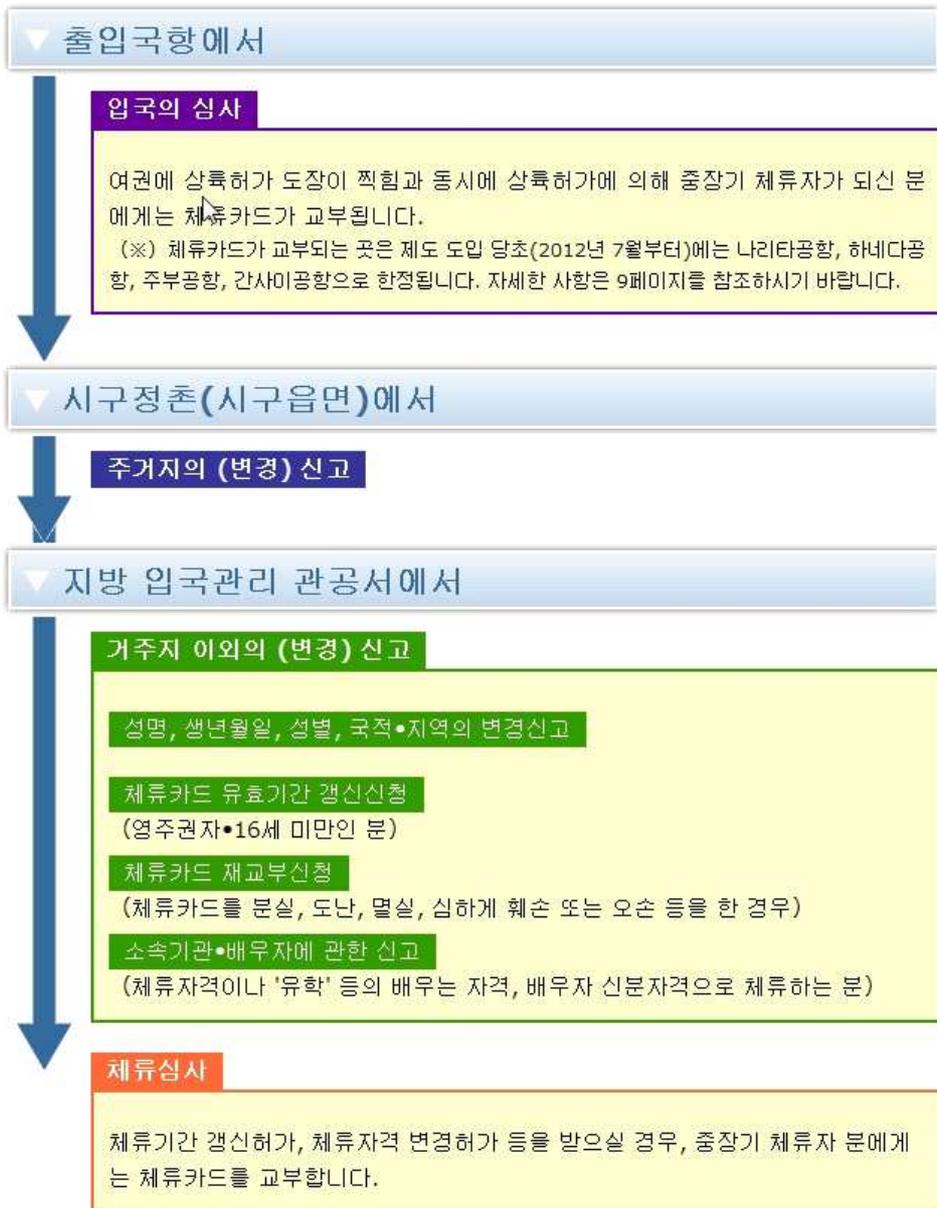
○ “체류카드” 발급대상자가 허위신고, 신고의무 위반, “체류카드” 수령.휴대.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현행법상 범칙금과 동일하며, 특별영주자는 휴대의무 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특별허가를 받거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이상 배우자로서 체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체류자격 취소사

유가 됨.

○ 또한 “체류카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신고 등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강제퇴거 사유가 됨.

## 7. 신 체류관리제도에 따른 절차의 흐름



### ○ 출입국항에서의 절차

-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및 간사이공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이 찍힘과 동시에 상륙허가에 의해 중장기 체류자가 된 사람에게는 “체류카드”가 교부됨.
- 그 외 출입국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찍고, 그 근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함. 이 경우에는 중장기 체류자가 이신

분이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주거지 신고를 한 후에 “체류카드”가 교부됨. (원칙적으로 지방입국관리국으로부터 해당 주거지로 우송).

#### ○ 지방자치단체(市.區.町.村)에서의 절차

- 출입국항에서 “체류카드”를 교부받은 사람은 주거지를 정하고 나서 14일 안에 “체류카드”를 지참하여, 주거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그 주거지를 신고하여야 함.
- 중장기 체류자가 주거지를 변경했을 때에는 변경 후 주거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안에 “체류카드”를 지참하여, 이전한 곳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변경된 주거지를 신고하여야 함.

#### ○ 지방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안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신고하여야 함.
- 영주권자 또는 16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세 생일로 되어있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 “체류카드”를 분실, 도난, 멸실, 심하게 오손 또는 훼손 등을 한 경우에는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중장기 체류자 중 배우자로서 '가족체류', '특정 활동', '일본인의 배우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14일 안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출두하거나 동경입국관리국에 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함.

※ 체류기간 갱신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영주허가 혹은 체류자격 취득허가시 중장기 체류자 분에게는 새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됨.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음).